

2020년 문화누림, 지역화폐 드림 사업 추가공모 공고

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과 지역 문화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<2020년 문화누림, 지역화폐 드림>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할 문화시설을 추가모집하오니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및 박물관·미술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 | 모집개요

① 접수기간: 2020. 7. 31.(금) ~ 8. 10.(월) 15:00 까지

○ 사업기간: 2020년 8월 ~ 12월

② 지원대상: 도립 문화시설, 공사립 박물관·미술관, 시·군 공공 공연장

○ 도립 문화시설, 박물관·미술관은 도비 100% 지원

○ 시·군 공공 공연장은 시·군비 및 자체재원 50% 부담 필수

※ 신청시점에 재정 미확보 시, 재정부담 협약서로 가능하나 추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

○ 사회적 물의 또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제외

③ 지원내용: 지역화폐 환급액, 운영비(카드발급비, 충전단말기구입비, 수용비, 여비 등)

※ 운영비는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우 가능, 인건비/자산취득비/운영수수료 등 지원불가

④ 지원방침

○ 환급률은 최대 50%로 하되, 시설별 환급률은 기관 자율적 설계

○ 코나아이 카드형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(성남, 시흥, 김포)은 자체 지역화폐(지류형 등)로 운영가능

2 | 신청방법

① 접수기간: 2020. 7. 31.(금) ~ 8. 10.(월) 15:00 까지

② 제출서류 ※ 지원서 서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(<http://www.ggcf.kr/>)

○ 공공 공연장

- ① 지원신청서 [서식1]
- ② 단체(개인)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[서식1]
- ③ 관람객 및 수입현황내역(2019~2020년) [서식2]
- ④ 공연장 기본운영현황
- ⑤ 2020년 하반기 공연일정(관람료포함)
- ⑥ 사업자등록증
- ⑦ 공연장등록증
- ⑧ 재정부담 협약서(시·군 공문)

※ 추후 자체 재원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도비지원액 환수

○ 박물관·미술관

- ① 지원신청서 [서식1]
- ② 단체(개인)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[서식1]
- ③ 관람객 및 수입현황내역(2019~2020년) [서식3]
- ④ 박물관·미술관 기본운영현황
- ⑤ 2020년 하반기 전시/프로그램일정(관람료/이용료포함)
- ⑥ 사업자등록증
- ⑦ 박물관·미술관등록증

③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yun_a@ggcf.or.kr)

④ 문의: 031-853-9829 (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)

○ 문의는 평일 9:00~17:00 가능

5 신청 유의사항

- 신청 서류는 제출기한(8.10(월) 15시)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
-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
-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의과정 등 사업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함.
-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하며 사업비 교부 후 보전불가
-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사업신청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.
- 심의결과에 따라 시설별 최종 지원금 결정됨.
- 제출 서류의 내용 중 의도적인 미 기입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음.

3 추진절차 및 심의선정

1 지원사업 추진절차

추진절차	내 용
추가공모 공고 (7.31.~8.10.) ↓	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안내
지원신청서 접수 (7.31.~8.10.) ↓	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(이메일 제출)
심의 및 선정결과 공지 (8.11.~8.14.) ↓	1차 행정심의: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검토 2차 서류심의: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심의(외부심의위원회) 선정결과 공지: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공문 발송
교부신청 (8.14.~8.28.) ↓	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: 교부신청서, 세부계획서, 통장사본 등
교부신청서 검토 및 교부 (8.14.~9.4.) ↓	교부신청서 검토완료 후 7일 이내

사업운영설명회 개최 (8월 3~4주 예정)	사업운영 지침 및 집행 정산 안내
↓	
사업운영 컨설팅 및 모니터링 (교부 후~12월)	각 시설별 사업운영을 위한 자문,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
↓	
결과공유 및 결과보고제출 (12월~1월)	성과공유회 개최 결과 및 정산보고제출: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(21.1.31.까지)

※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2 심의방법

- 외부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진행(관련분야 전문가 3인)
- 심의방법
 - 행정심의(1차): 신청자격 및 서류확인
 - 서류심의(2차): 지원타당성 및 적절성 평가(최종선정 및 지원교부액 결정)
- 심의기준
 - 사업계획의 타당성(30), 사업예산수립의 적절성(30), 사업수행능력(20), 기대효과(20)

3 결과발표: 2020. 8. 14(금) 예정(홈페이지 및 개별 유선 안내)

4 유의사항

-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, 공문 및 유선 안내
-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평가제외, 선정 취소, 지원사업 신청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.
- 지원사업자는 심사위원회 구성, 심사기준, 심사과정,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.
-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-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.
- 지원금은 지정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·집행하여야 하며, 경기문화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함.
- 지원금 집행 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, 선정 당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결정을 취소 및 환수 조치
-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함.
- 지원선정 후 현장 모니터링 및 추가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.
-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가 부담함.

참고 2020년 문화누림, 지역화폐 드림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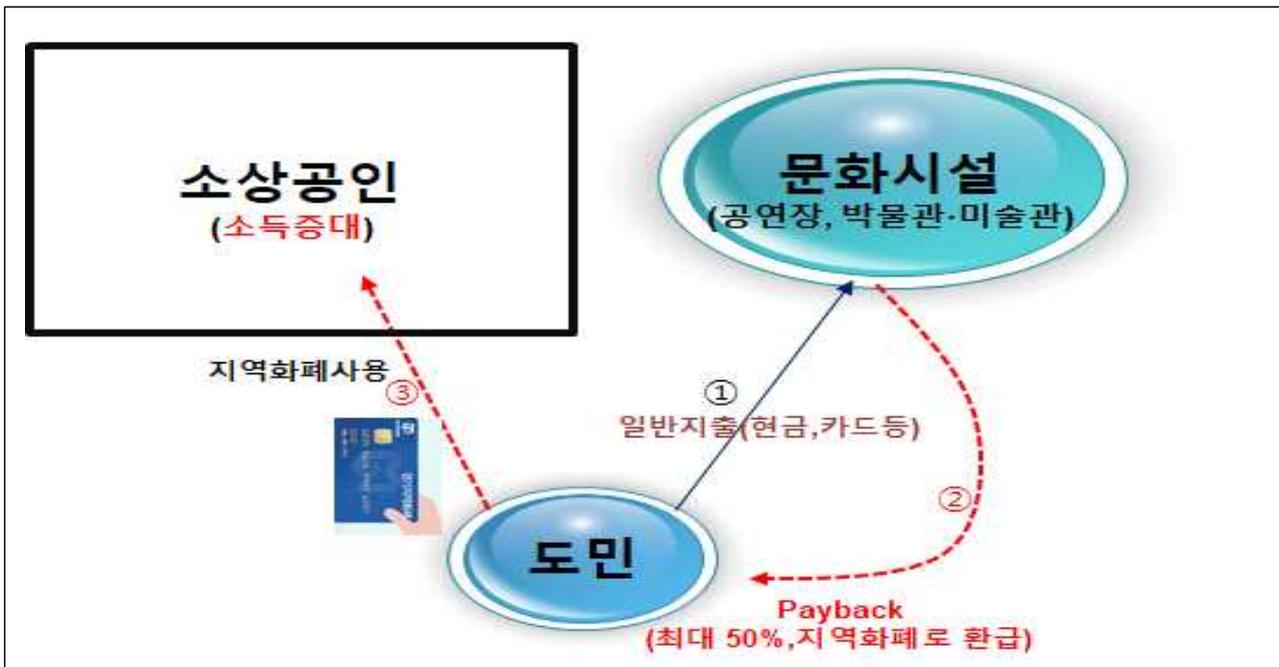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공공 공연장 및 박물관·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도민 문화향유권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(근거)「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

- 지역화폐 환급 흐름도



- 기대효과 : 문화시설과 지역화폐 연계, 하나의 정책으로 세 가지 효과 창출

- ① 이용료 인하효과를 통한 ‘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’
- ② 지역화폐 환급제도 활용, 코로나19로 어려운 ‘문화시설 이용 활성화’
- ③ 환급받은 지역화폐 사용으로 ‘지역경제 활성화’ 도모

□ 운영개요

- 환급방법 : 이용자가 문화시설 방문 시, 실제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액(최대 50% 이내)를 ‘경기지역화폐’로 환급
 - (지역화폐 미소지자) 시설에서 사전에 지역화폐 공카드와 충전단말기를 구비, 공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환급
 - ※ 공카드와 충전단말기 비용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비
 - (지역화폐 소지자) 소지한 지역화폐 카드를 충전단말기를 통해 해당하는 금액 환급
 - ※ 경기지역화폐 기보유자는 지역 상관없이 소지한 카드에 충전방식으로 환급가능,
- 세금이나 법인예산으로 이용료가 지원되는 학교·시설 등의 단체관람객, 할인제도 등을 통한 무료관람권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

< 지역화폐 환급 제외대상 >

- 세금이나 법인예산으로 이용료가 지원되는 학교·시설 등의 단체관람객
- 복지할인 등을 통해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
- 입장료 및 체험료 이외의 편의시설 사용료(카페 등 이용료)
 - 단, 환급받은 지역화폐로 문화시설 내 편의시설 사용가능(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장)

- 경기도 착한여행캠페인, 문화N티켓 등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통해 할인받은 티켓은 최종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(이중지원 방지)
- 일정 기간 경과 후(2021.12.31.)에도 기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지역화폐 금액은 회수하여 재정낭비 방지(소멸시효 : 2021.12.31.)
 - ※ 참여시설이 (주)코나아이와 계약체결 시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명시, 소멸시효 경과한 금액은 (주)코나아이와 협의하여 회수
- 환급률은 최대 50%로 하되, 시설별 환급률은 기관 자율적 설계
- 코나아이 카드형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(성남, 시흥, 김포)은 자체 지역화폐(지류형 등)로 추진가능
- 현금성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각 참여자들이 투명하고 청렴한 사업운영 노력 필요
- 세부 운영방법은 사업선정 시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